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
----------	----

2022년 9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8월 30일, 서대문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2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병선 자치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토지의 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지구의 토지가 2개 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한 필지에 대해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춰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규정 (안 제1조)
- 2). 서대문구 동 명칭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3).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현행 조례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연혁표 1) ~ (개정연혁표 12)를 별표로 규정하여 조례를 간명하게 정비 (안 별표 신설)

- 별표에 (개정연혁표 13)을 신설하여 2개 동에 걸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필지 1개 동으로 일원화

아파트명	현재 필지	편입 동
DMC 센트레빌	북가좌동 457번지, 인접도로 457-1번지	→ 남가좌동
럭키대현아파트	북아현동 1008번지	→ 대현동
총정로 SK VIEW	미근동 331	→ 합동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 3). 기 타 : 입법예고 (2022. 8. 3. ~ 2022. 8. 23.)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승락)

1. 법정동과 행정동

- “동(洞)”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서는 동(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동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지방자치법」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법정동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으로 1914년 일제 강점기 때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사용하며 거의 변동이 없다는 특징이 있음.

(관리주체 : 국토교통부)

- 법정동은 부동산 등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公簿)나 신분증의 주소(도로명주소 괄호 내 병기되는 동명칭)에 사용됨.

○ 행정동은 오랜 전통을 지닌 법정동과 달리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 설정된 구역으로 주로 인구수의 증감과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설이나 변경이 쉽다는 특징이 있음.

(관리주체 : 행정안전부)

- 행정동은 주민센터 설치의 기준이 되며 선거구 주소에 활용됨.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서대문구는 20개의 법정동이 규정돼 있고 14개의 행정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본 전부개정안은 법정동의 명칭 변경없이 구역에 대하여 경미한 조정을 하고 그동안의 개정 연혁사항을 본칙이 아닌 별표에서 규정하여 조례의 규정방식을 올바르게 정비하는 내용임.

<서대문구 행정동과 법정동 현황>

연번	행정동	법정동
1	충현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합동, 미근동, 북아현동
2	천연동	천연동, 냉천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3	북아현동	북아현동
4	신촌동	대신동, 대현동, 신촌동, 봉원동, 창천동
5	연희동	연희동
6	홍제1동	홍제동
7	홍제2동	
8	홍제3동	
9	홍은1동	홍은동
10	홍은2동	
11	남가좌1동	남가좌동
12	남가좌2동	
13	북가좌1동	북가좌동
14	북가좌2동	
계	14개동	20개동

2. 구역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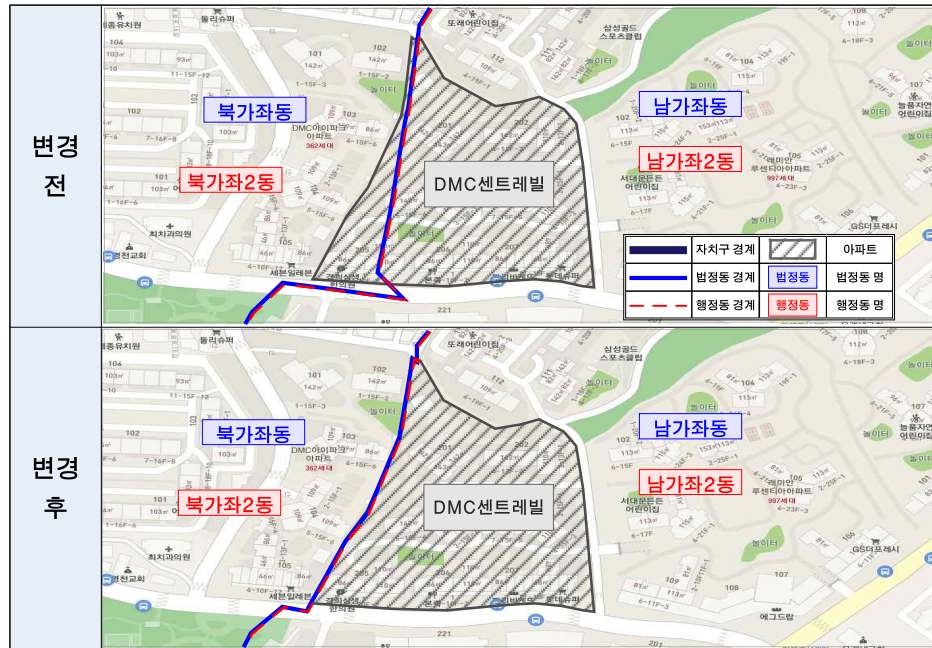
○ 개정안은 남-북가좌동, 북아현-대현동, 미근동-합동 등 3곳의 경계를 각각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공통점이 있음.

○ 일반적으로 읍·면·동 간 경계조정은 토지개발이나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 경우 사업완료시 사업시행자의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경계조정 절차를 진행함.

○ 그러나 본 개정안에서의 변경대상 단지의 입주년도는 각각 2010년(DMC센트레빌), 1999년(럭키대현), 2008년(충정로SK뷰)으로, 사업완료 당시 경계변경 신청이 없어 한 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진 채 현재에 이르고 있었던 상황임.

○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구청이 직권으로 경계를 변경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적극행정의 측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였다면 동경계가 장기간 불합리하게 존속하지는 않았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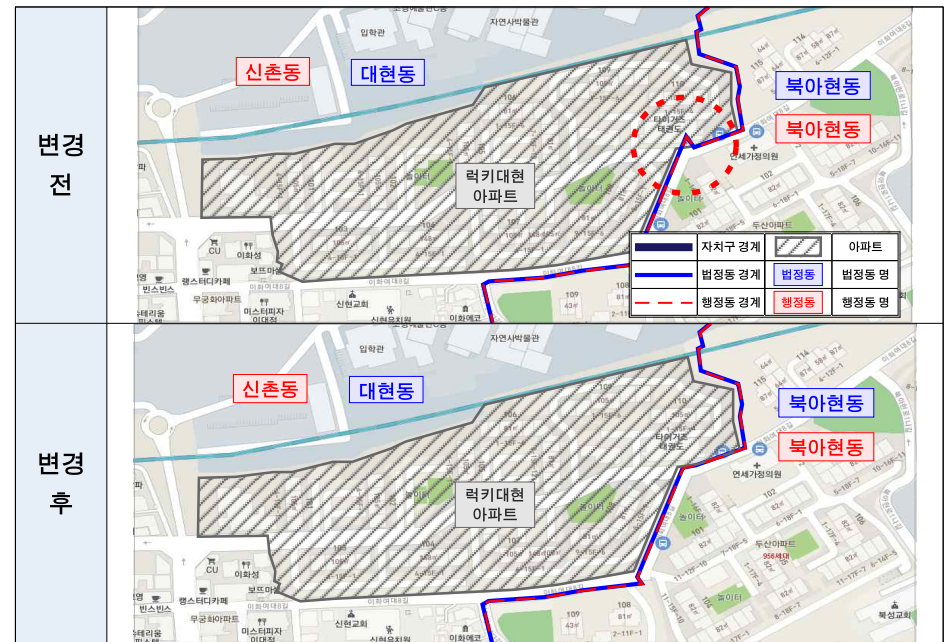
○ 동 경계 변경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DMC센트레빌



연번	법정동	변경 후 증감현황			행정동
		필지수	면적 (㎡)	인구(주민등록)	
1	북가좌동	△2	△3,549.2		북가좌2동
2	남가좌동	+2	+3,549.2		남가좌2동

* 북가좌동 457, 457-1번지 → 남가좌동

나. 럭키대현아파트



연번	법정동	변경 후 증감현황			행정동
		필지수	면적 (㎡)	인구(주민등록)	
1	북아현동	△1	△24.2		북아현동
2	대현동	+1	+24.2		신촌동

* 북아현동1008 → 대현동

다. 충정로 SK부



연번	법정동	변경 후 증감현황			행정동
		필지수	면적(m ²)	인구(주민등록)	
1	미근동	△1	△1,012.9		충현동
2	합동	+1	+1,012.9		충현동

* 미근동331 → 합동

- 3개 단지 모두 법정동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변동이 없고 도로명주소,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등에서의 변동도 없으나,
- 법정동의 변경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토지관련 표기가 변경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3. 기타사항

- 현재의 조례는 제1조만 조제목없이 규정하고 이하 매번 개정연혁표가 신설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명	동 명
서대문구 (20개 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합동, 미근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대신동, 대현동, 신촌동, 봉원동, 홍제동, 창천동, 연희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홍은동
(개정연혁표 1) 00지역을 00동에 편입한다.	
(개정연혁표 2) xx동 **번지를 00동에 편입한다.	
⋮	
(개정연혁표 12) xx동 **번지를 00동에 편입한다.	

- 이러한 규정방식은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식이고 내용 이해에도 지장이 있는 바, 본 전부개정안과 같이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본칙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개정연혁은 별표로 따로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

8. 소수의견요지 : 없음